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5.9.3.)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규섭]

(

목 차

1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6
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4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5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6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7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8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지원 조례안	44
9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8.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8. 19.

2.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15.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제명변경

- 현행 :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 개정 :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나. 사회보장 명칭변경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상근간사 → 직원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규정(안 제5조)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제7조

나. 예산조치 : '16년 예산 2천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7. 10. ~ 7. 3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15.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 읍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협의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음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1.] [법률 제12935호, 2014.12.30., 제정]

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7.1.] [보건복지부령 제329호, 2015.7.1., 제정]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8.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8. 19.

2. 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15. 7. 1.)이 개정·시행되어, 그동안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위기사유 외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정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안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나. 예산조치 : '15년도 예산 271,838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개혁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7. 22. ~ 8. 1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15. 7. 1.)이 개정·시행되어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34호, 201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14.12.30.개정 2015.7.01 시행)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296호, 2015.6.1., 일부개정]

제2조(생계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 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現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3조(의료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 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5.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주거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거소(臨時居所)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의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교육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학교 또는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이하 "학비"라 한다)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분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그 밖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5.7.1.] [보건복지부령 제319호, 2015.6.2., 일부개정]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6.2.]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시행 2015.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2호, 2014.12.24, 일부개정]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나.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다.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 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4.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 2호 및 동시행령 제3조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7.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232호, 2014.12.24>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지사항('15.6.04.)

공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기준 예시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호 ~ 제6호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아래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예시'를 참고하여 시군구 상황에 맞게 적용 필요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예시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예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예시’에 추가할 수 있는 문구 검토 필요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8. 19.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8. 19.

2. 개정이유

-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기능 및 구성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8조)
 - 기 능 : “심의” ⇒ “협의 · 조정”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내실화에 관한 사항 등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 “부군수”
위 원 :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군수가 위촉한 사람
 - 위원장 직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수행 불가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장)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7. 22. ~ 8. 1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79호, 2013.8.13., 일부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 2012.8.2.] [법률 제11284호, 2012.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정보 및 귀화허가 신청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결혼이민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4004호, 2012.7.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284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사무를 위한 설비를 갖춘 별도 사무실, 원활한 상담과 비밀보장을 위하여 분리되거나 방음장치가 설치된 상담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능력 및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며,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학교나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7.31.]

제12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표 1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수행 경력
 2. 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시설의 적정성
 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7.31.]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 [여성가족부령 제61호, 2014.12.12., 타법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2.8.16.] [여성가족부령 제33호, 2012.8.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1284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4호, 2012. 7. 31. 공포, 8.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서에는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관련 서식을 정리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제4조(위탁계약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정책결정과정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8.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8. 19.

2. 개정이유

- 재난안전 조직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668명 ⇒ 670명(증 2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 2명

- 현행 : 596명(본청274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 45명, 읍36명, 면136명)
- 조정 : 598명(본청276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 45명, 읍36명, 면136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연 68,000천원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6. 12. ~ 15. 7. 0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재난안전 조직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4.7.] [대통령령 제26183호, 2015.4.7., 일부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

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8.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8. 19.

2. 개정이유

- 현재 조성 중인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구역이 2개의 법정리 (가조면 도리 일부와 석강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통합하여 향후 토지관리 및 행정재산관리 시 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행정행위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법정리 구역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1)
 - 가조면 도리(10필지 342,671m²) 일부
 - : 도리 689, 695, 695-1, 696, 697, 698, 820, 산10, 산13-2, 산24-8번지
 - ⇒ 가조면 석강리로 편입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5. 6. 19. ~ 7. 09.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현재 조성 중인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구역이 2개의 법정리(가조면 도리 일부와 석강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8.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8. 19.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포상,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및 별표 12
-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방범대 운영비 : 16개대 연간 2,400천원 (총38,400천원) / 일반보상금
- 연합회 체육대회 : 4,000천원 / 민간행사 보조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6. 22. ~ 7. 1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14.7.30\]](#) [\[안전행정부훈령 제48호, 2014.7.30, 일부개정\]](#)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10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1과 같이 설정·운영한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성목	설 정 (통계목 포함)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상금	1.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2. <u>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u>
		01. 사회보장적수혜금 ~ 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생략)
		0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 기초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 2. 적용인원수 및 일수는 과년도 실적과 2015 방법활동계획을 적용 3.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운영비 4. 방법순찰대에 대한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1/2이내 적용) 5. 출동비는 각대별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계상

□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

제정 1998. 5.26 예규 제 48호
 개정 2000.11.29 예규 제 77호
 개정 2005. 4.11 예규 제 96호
 개정 2008. 9.11 훈령 제16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민의 자원봉사에 의하여 지역방범활동을 하는 조직(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이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협력 방범체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자율방범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다른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명칭】 자율방범대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1.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지역(치안센터 명칭) 자율방범대(○○파출소)」라 칭한다.
2. 삭제

제 2 장 조직 및 임무

제4조 【조직구성】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자율방범대는 치안센터(파출소)별로 1개 조직을 편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

며 지구대장(파출소장)이 통합 관리한다. 단, 분소운영 등 지역 여건을 감안 복수조직도 가능하다.

2. 조직원 단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치안센터(파출소)단위 조직별로 대장, 총무를 두고 적정인원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대원의 임무】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지구대(파출소) 또는 치안센터 경찰관 근무를 보조 또는 자율적으로 아래와 같은 활동에 종사한다.

1. 경찰관을 도와주는 검문검색 지원, 신고출동 동행 및 상황근무 보조, 112순찰차 동승
2.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현행범 체포, 범죄신고
3. 청소년 선도, 보호 및 미아·미수출입 보호
4. 무질서행위, 오물 무단투기행위 등 계도
5. 관내행사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및 기타 업무분담

제6조 【대원 및 임원의 선임·해촉】 자율방범대원과 임원의 선임·해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원의 선임은 지역주민중 자원봉사활동 희망자중 이·웃장의 추천으로 지구대장(파출소장)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임하고 동위원회에서 선임된 자를 파출소 자율방범대장 명의로 별표 1과 같이 위촉하고, 별표 2·3과 같이 신분증을 발급한다.
2. 치안센터(파출소) 자율방범대는 대장과 총무를 두며, 그 선임방법은 전체 대원 1/3 또는 지구대장(파출소장)의 추천으로 전 대원의 투표에 의해 선정한다.
3. 자율방범대원의 해촉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또는 활동이 부진하거나 민원야기 등으로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해촉한다.

제7조 【대원의 자격요건】 자율방범대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관내 거주자로서 20세이상 50세이하인 자
2. 인격 및 행동에 있어서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자
3.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4. 경찰대상업소 운영자 및 파렴치한 전과자가 아닌 자
5. 기타 지구대장(파출소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3 장 근무 및 관리

제8조 【근 무】 자율방범대원의 근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율방범대원의 근무는 경찰관과 같이하는 경찰초소 근무, 신고출동, 상황 근무 보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지구대장(사무소장·민원담당관·파출소장)의 지시감독을 받아 순찰, 112순찰차 동승, 초소 등에서 「목」 지키기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순찰 및 「목」 지키기 장소는 자율방범대원의 주거지, 희망장소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3. 대원은 주 1회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중 범인을 검거한 경우 즉시 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4. 근무중 중요사항을 취급하였을 시는 유·무선으로 파출소에 즉시 보고한다.
5. 대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지구대장(사무소장·민원담당관·파출소장)이 일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감독】 경찰서장(지구대장·사무소장·민원담당관·파출소장)은 자율방범대원의 근무 및 필요한 사항을 교양 및 지도·감독한다.

1. 지구대장(사무소장·민원담당관·파출소장)은 근무 투입전 관내 치안상황 등 필요사항을 교양후 근무 배치하여야 한다.
2. 지구대 외근경찰관 순찰시는 자율방범대원 근무 현장을 방문, 활동요령을 지도 격려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
3. 경찰서장(지구대장·사무소장·파출소장)은 자율방범대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현지확인 지도·감독 및 격려하여야 한다.

제10조 【복장 및 장비】 자율방범대원의 근무복장은 주민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으면서 자율방범 봉사활동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간소복에 방법조끼(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완장 및 모자를 착용하여야 하며, 유사 계급장 패용 및 경찰관과 유사한 복장 착용을 금한다.

① 복 장

1. 상·하의 : 간소복, 상의는 잠바 착용 가능
2. 모 자 : 흑색 기동모(모자 모표 : 별표 4 참조)
3. 완 장 : 황색바탕에 흑색문자(완장 규격 : 별표 5 참조)

② 차 량

1. 자율방범대 차량은 경찰 112순찰차와 유사한 도색 및 문형을 사용할 수 없으며, 「주민자율방범순찰, ○○자율방범대」로 통일 표시하여야 한다.
2. 자율방범대 명의의 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경광등은 탈착식으로 방법활동시에만 부착 활용한다.

③ 장 비

1. 방법활동중에는 방법조끼(야광밴드), 경적, 손전등 등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제11조 【자율방범대 방법초소 관리】 순찰지구대장(파출소장)은 방법대장과 협의, 다음 각호와 같이 방법초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율방범대 방법초소에는 「경찰관련 마크」를 부착·게시할 수 없으며, 현판은 「○○지역명) 자율방범초소」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방법초소 및 주변을 상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민간인이 무단 출입할 수 없도록 시건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대원의 사기진작

제12조 【사기진작】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은 자율방범대원 각자가 조직원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직접 느낄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제도적 지원

1. 지구대장(파출소장)은 대원중 민방위 대상자를 읍·면·동에 등록하여 대상자의 활동상황을 월1회 읍·면·동장과 협의, 기본교육이 면제·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2. 범죄신고 및 범인검거는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 의거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자체 사기진작 방안

1. 자율방범대원이 범인검거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범인검거시는 수시 포상하고, 직무 성실자 등 유공자선발, 정기 포상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
2.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활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체육대회, 간담회 등을 개최, 조직의 응집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1998.5.26)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체계획 수립】 각 경찰서에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역설정에 맞는 자율방범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기조직 운영중인 자율방범대 복장은 새로운 복장으로 교체할 때까지는 복장은 착용하고, 새로 조직하는 자율방범대는 이 규칙에 의한 복장을 착용한다.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5.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5. 12.

2. 제정이유

-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사업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 교육여건 개선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실태조사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15년 예산 2,604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3. 13. ~ 4. 03.

(나) 예고결과 : 의견 있음(결과 요약서 붙임)

○ 의견제출자 : 399(단체 6, 개인 393)

○ 의견 미반영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등에 의한 지원대상에 관하여,
- **안 제3조에서**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의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 **안 제6조에서**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7.22>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 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종합지원사업(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방과후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5.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 지방자치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거.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 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15. 7. 31.
- 나. 발 의 자 : 권재경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 2015. 8. 25.

2. 제정이유

- 군 관내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문화유적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

3. 주요골자

- 가. 향토문화유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 (안 제2조)
- 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다.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라. 기록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문화재보호법」, 「경상남도문화재보호 조례」
- 나. 예산조치 : 2016년 당초예산 확보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8. 17. ~ 8. 24.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군 관내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은 향토문화유적에 대해 정의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범위와 보존 관리 및 기록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

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

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4(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사람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경상남도지정문화재(이하 “도 지정문화재”라 한다)란 도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도지사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1.25, 2003.04.24, 2009.05.14>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11.08.18>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 <개정 2003.04.24>
 - 가. 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신설 2003.04.24>
 - 나. 경승지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신설 2003.04.24>
 - 다.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지형·지질·광물·동굴·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신설 2003.04.24> <개정 2011.08.18>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민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그 밖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1993.11.25, 2009.5.14, 2011.8.18, 2014.10.10>
- ② 이 조례에서 “문화재자료”란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5.14>

- ③ 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3.04.24>
<개정 2009.05.14>
- ④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신설 2011.08.18>
- ⑤ 이 조례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8.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8. 19.

2. 개정이유

- 실버레포츠타운 시설 준공에 따른 각종 시설별 사용료 기준 마련 및 군정시책반영과 상위법령 위반 등 자치법규 정비대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사용료 기준 추가함(안 별표)

- 다목적구장, 씨름장 및 소규모공연장, 골프장 신설함

나. 사용료 경감조항 추가함(안 제15조제2항·제4항)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주관행사 시 80퍼센트 경감
- 수영장 이용 월 회원 중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퍼센트 경감

다. 상위법령 위반 등 정비대상 조항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제24조제3항)

- 사용허가 및 위탁 취소 시 손해배상 관련 규정 삭제
- 라.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조항 삭제함(안 제2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6. 10. ~ 2015. 6. 3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실버레포츠타운 시설 준공에 따른 각종 시설별 사용료 기준마련 및 군정시책반영과 상위법령 위반 등 자치법규 정비대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8.4.] [법률 제13128호, 2015.2.3.,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6.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8호, 2014.12.22., 일부개정]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경상남도 법무담당관-2002호(2015.3.13.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상위법령 위반 등 개정대상

□ 유형 분류

1.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2.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이탈, 불일치 포함)
3.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신설

관련 조례	현행 및 문제점	개선 내용	유형	해당조문
공공체육시설 설차운영 조례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군수가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	삭제하여 법률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제10조제2항 삭제